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한덕수 (행정안전부 장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사혁신처에 인재개발플랫폼 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인사교류 활성화 및 나라일터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6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소방공무원 소청심사 기능 강화를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1명(5급1명)의 존속기한을 2025년 3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며, 인재개발플랫폼 구축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3명(4·5급 1명, 6급 1명, 7급 1명)의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감축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3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00. 00. ~ 0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에 제1항을 삭제하고, 제2항 중 “2023년 3월 31일”을 “2025년 3월 31일”로 한다.

별표 1 중 총계 “402”을 “404”로 하고, 일반직 계 “401”을 “403”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376”를 “378”로 한다.

별표 4호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제30조(한시정원) ① 국가 인재개발 플랫폼 구축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3년 3월 31일까지 별표 4에 따른 한시정원을 인사혁신처에 두며, 별표 4의 정원 중 1명(7급 1명)은 국세청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인사혁신처장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국세청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u> ② 소방공무원 소청심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u>2023년 3월 31일까지</u> 별표 4에 따른 한시정원을 인사혁신처 소속기관에 둔다. ③ (생 략)	<u>(삭 제)</u> ② ----- ----- ----- ----- <u>2025년 3월 31일까지</u> ----- ----- -. ③ (현행과 같음)

신 · 구 정원 대비 표

■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별표 1]

인사혁신처 공무원 정원표(제26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		.		.		
			<u>402</u>		<u>404</u>	+2	
	.		.		.		
	.		.		.		
일반직	계		<u>401</u>		<u>403</u>	+2	
	.		.		.		
3급	또는	4급 이하	<u>376</u>		<u>378</u>	+2	
	.		.		.		
	.		.		.		

■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별표 4] <개정 2023. 00. 00.>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 한시정원표(제30조 관련)

1. 제30조제2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5년 3월 31일)

총계	1
일반직 계	1
5급 이하	1

2. 제30조제3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4년 12월 31일)

총계	1
일반직 계	1
5급 이하	1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	
연 락 처	(044) 205 - 2308